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8회 제2차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11.

도 하 석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도하석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운동조직의 육성·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3조에는 국민운동조직 육성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,
-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및 회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【도하석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10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 도하석, 이선주, 박종길,
서보영, 정순옥, 이진환,
손범구, 이영빈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운동조직의 육성·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국민운동조직 육성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라.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마.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및 회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민운동조직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.
 - 가.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
 - 나.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달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
 - 다.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달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
2. “회원”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민운동사업”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
2.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
3.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경비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지원 절차 등) 제3조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,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예우)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2.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(先導)하고 확산시키기 위

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·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(出捐金)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출연·보조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